

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정신건강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
실효성 있는 정신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
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인 「정신건강복지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· (현행) : 「정신보건법」 → (개정)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”를 “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5조제3항”으로,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5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「정신보건법」 제27조”를 “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53조”로, “정신보건심의위원회”를 “정신건강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 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 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 에 따른 구미시 <u>정신보건센터</u> 에 둘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 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 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.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	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5조 제3항----- <u>정신건강복지센 터</u> -----. ③ ----- -----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----- ----- --. ----- -----.
제8조(자살예방·생명존중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자살예방·생명존중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를 둘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「정신보 건법」 제27조에 따른 구미시 <u>정신보건심의위원회</u> 가 대행하	제8조(자살예방·생명존중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「정신건 강복지법」 제53조----- <u>정신건강심의위원회</u> -----

게 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 략) 제10조(민간 단체 등의 지원) ① (생 략)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·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<u>구 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를 준 용한다.	-----.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0조(민간 단체 등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<u>구 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」- -----.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정신건강복지법」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3조(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·군·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

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

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
4.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
및 단체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·인력·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건강증진과
입 안 자	과 장	이 명 희
	담 당	최 화 심
	담 당 자	김 혜 정 (480-4062)